

『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』

《 檢 討 報 告 書 》

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

종전에는 의료기기에 관한 사무가 약사법에 의하여 관리 되었으나, 효율적인 의료기기 관리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2003.5.29 의료기기법이 제정되어 2004.5.30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사무위임조례를 제정된 의료기기법에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.

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- 제정된 의료기기법에 따라 용어를 의료용구판매업에서 의료기기판매업으로 변경하고, 근거법령의 표시를 약사법에서 의료기기법으로 고치는 것이며,
- 의료기기법에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하는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(사무위임)에 근거하여 종전과 같이 보건소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

- 제정된 의료기기법에 따라 용어와 근거법령 및 위임사무의 내용을 개정함은 당연한 조치로 사료되며,
- 사무위임 또한 행정능률의 향상과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전과 같이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6. 2. 20

보고자 : 김 찬 재